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대통령령 제20464호(2007.12.28)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 및 예산 지원액의 조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안 제1조)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변경
- 예산지원 범위 문안의 현실적 수정(안 제4조제1항)
 -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퍼센트”
⇒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10퍼센트” 변경
- 보조기준액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
 -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2008. 6. 20 ~ 7. 11(21일간) 실시(의견없음)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퍼센트”를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u>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근거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 ----- ----- ----- -----.</p>
<p>제4조(예산지원) ①군수는 <u>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결산액의 10퍼센트</u>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예산지원) ①군수는 <u>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10퍼센트</u> -----</p>
<p><u><신 설></u></p>	<p><u>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 대통령령 제20464호(2007. 12. 28)로 규정 명칭 변경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